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33
----------	-------

발의연월일 : 2025. 12. 23.

발의자 : 송재봉 · 박지원 · 김문수

김남근 · 민병덕 · 이광희

황명선 · 박정 · 이주희

안태준 · 박정현 의원

(11명)

###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침해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 보호지침 마련, 분쟁조정 · 중재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기술거래 활성화와 기술유출 위험 증가 등 기술보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전문인력 양성, 보안체계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술제공요구 절차, 비밀유지계약 의무, 보복행위 금지 등 침해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예방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수탁 · 위탁거래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부당 활용 및 반환 불이행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 규율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또한 시정권고의 강제력 부족으로 위반행위 억지력이 미흡하고, 금지청구권, 손해배상 규

정 등 민사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기업의 권리구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률의 제명을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기술제공요구의 서면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 사전 예방과 신속한 시정조치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분쟁조정 · 중재 절차를 정비하고 금지청구권 · 손해 배상책임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마련하여 기술침해 대응과 피해회복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법률의 제명을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명).
- 나. 중소기업기술을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에 포함하고, 수탁 · 위탁거래 관계, 거래교섭 관계 및 협신형 중소기업 등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 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와 수탁 · 위탁거래 관계 및 중소기업 기술 거래 관계에서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기술제공요구의 서면 의무화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신설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라. 조사 결과 위반행위로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피해가 발생하

였거나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부과, 교육명령 및 과징금 부과 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위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침해사실 입증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피해지원 기준 등을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사.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 중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알선 · 조정 · 중재 절차를 세분화하고, 조정부 단독결정 및 직권조정결정 등을 도입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를 확립함(안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 산정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함(안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자. 타인의 중소기업기술을 임차한 자,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 공표 이후에도 위반행위에 따른 명령을 불이행한 자 및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을 신설함(안 제51조 및 제52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침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기술”이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이하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이라 한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다.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라. 취득한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마. 계약관계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술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수탁·위탁거래 관계”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5.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계”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

조제3호의5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위탁을 받는 기업을 말한다.

7. “위탁기업”이란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위탁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8. “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의2에 따른 기술혁신  
형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4의2에 따른 경영혁신  
형 중소기업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발명 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5조(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기반구축 및 추진방안
3.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에 대한 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에게 협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기술 보호 수준 및 역량
2.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보유 및 관리 실태
3. 중소기업기술정보의 관리 및 침해 현황
4.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 및 취약 요인
5.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기

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에 필요 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중소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장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제9조(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소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 또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계에 있는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기술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의 반환·폐기를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3. 협상, 계약 등의 종료 이후에도 제공받은 중소기업기술의 반환 ·

폐기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중소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계약기회(契約機會)의 제한 · 박탈 또는 거래의 물량을 줄  
이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보복행위”  
라 한다)

가.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관계  
기관에 고지(告知)한 행위

나. 제18조에 따른 기술의 임치를 요구한 행위

다. 제38조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한 행위

제10조(기술제공요구에 대한 서면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상대  
방에게 주어야 한다.

1. 수탁 · 위탁거래 관계에서 수탁기업에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의  
제공을 요구하는 위탁기업

2.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계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에 침해대상 중소기  
업기술의 제공을 요구하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② 제1항 각 호의 요구에 따라 중소기업이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  
을 제공하는 경우 상대방은 해당 기술을 제공받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 계약”이라 한다.)을 중소기업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의 제공 목적 및 범위
2.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
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술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조사) ① 제9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중소기업자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4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 중재위원회의 조정 · 중재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위반행위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신고한 중소기업자등이 제34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중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시정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반행위를 한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벌점의 부과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2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가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벌점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교육명령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용은 그 기업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명령 등의 조치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6조(과징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제4호를 위반한 위탁기업의 경우 수탁기업에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거래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2. 제9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제4호를 위반한 자의 경우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3. 제9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얻은 이익액의 최대 5배 이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건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제42조에 따른 금지청구의 소가 제기되거나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2.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 기록의 전체목록

### 3. 그 밖의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

#### 제4장 중소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및 기반 조성

제18조(기술 임치제도) ①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임치기업”이라 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보유한 기술의 임치(수탁·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을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등록할 수 있다.

② 수치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제공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임치기업의 기술을 요청한 자에게 이를 제공한다.

③ 정부는 수치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기술임치 등록사항 및 수치인의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술 임치제도 활용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제18조에 따른 기술 임치제도를 전산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기록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 임차물을 담보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임차제도 활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보호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차제도 활용 지원
2. 제27조에 따른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지원
3. 제28조에 따른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중소기업기술 보호 실태의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

제2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술 침해 및 유출신고의 접수
  2. 보안전문가 현장파견을 통한 기술보호 진단
  3.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피해구제에 관한 자문
  4.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5.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
  6.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보호지침의 제작·배포

2. 해외 기술유출에 관한 실태조사
  3.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안교육 및 상담·자문
  4. 해외 기술보호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5. 그 밖에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지정 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3개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홍보·교육)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중소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홍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유출방지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외부의 침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보호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호관제서비스를 운영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기술보호관제서비스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보안환경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피해 입증 지원) ① 정부는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기술 침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을 통한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 산정 업무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이 보유한 디지털기기에 남아 있는 증거 확보·복원·분석 등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입증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피해회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전담기관에 관련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 특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보호 기반조성과 신속한 피해회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 감면 등 지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32조(국제협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안시스템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2.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3.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4.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5. 국제 전시회·학술대회 등의 참석 및 개최
6.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33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분쟁 조정 및 중재

제34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분쟁의 알선 · 조정 · 중재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3. 조정부 및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규칙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기술 또는 정보 보호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4.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
  6.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재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전담기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⑨ 정부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조정 · 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사건을 담당한 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이 속한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조정부 또는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사건을 담당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하고, 해당 위원 및 당사자 양쪽은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 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을 담당한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속한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⑦ 제척·기피 또는 회피에 따라 조정부 또는 중재부에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을 지명하여 그 조정부 또는 중재부를 보충한다.
- ⑧ 조정 또는 중재 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

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알선) ①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알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장이 제34조제10항의 전문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하여 제38조제3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⑤ 알선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사실조사)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중재를 위하여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4조제10항에 따른 전문위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38조(분쟁의 조정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으며, 조정부의 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조정부의 회의는 조정부의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의 위원이 결정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건
2. 제36조에 따른 알선 절차 중 조정신청이 된 사건
3. 제37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이루어진 사건
4. 사법기관에서 위원회로 이관되는 사건

③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⑤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합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
2.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3.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기술침해 및 손해배상 등이 반영된 조정내용에 대하여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한 경우

2.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한 분쟁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분쟁의 중재 등) ① 위원회는 분쟁의 중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를 둘 수 있으며,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부의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중재를 받으려는 자는 분쟁에 관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의 중재판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정은 중단된 것으로 보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재를 담당할 중재부를 선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가 제3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1. 위원장에게 중재를 담당할 중재부의 지정을 위임하는 방법
2. 위원장이 제시하는 중재부 중 하나를 당사자의 합의로 선택하는 방법

⑥ 위원장은 당사자가 제5항제2호에 따라 중재부의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재부를 선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재사건의 내용, 해당 기술 분야 등을 고려하여 중재 절차를 담당할 중재부를 지정할 수 있다.

⑦ 사건의 당사자는 제5항제1호 또는 제6항에 따라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불복할 수 없다.

⑧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중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중소기업기술 분쟁의 중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중재법」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40조(자료요청 등) ①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필요한 자료를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조정부는 제38조제3항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건의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의 당사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부 또는 중재부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요구와 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청취할 경우 비공개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및 청취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조정 · 중재비용 등)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 중재를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및 중재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제42조(금지청구권 등) ① 중소기업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자등은 제9

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그 밖에 제9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3조(손해배상책임) ①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기업”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 손해를 입힌 자(이하 “가해기업”이라 한다)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해기업이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피해기업에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기업이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해기업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개선요구,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여부, 시정

## 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공표 여부

5. 위반행위의 기간 · 횟수 등
6. 가해기업의 재산상태
7. 가해기업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8. 가해기업의 우월적 지위 여부
9.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

제44조(손해액의 인정 등) ① 법원은 가해기업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기업이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가해기업이 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품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 가. 그 물품 등의 양도수량(피해기업이 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피해기업이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 등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피해기업이 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품 등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 나. 그 물품 등의 양도수량 중 가목에서 산정되지 못한 수량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술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2. 중소기업기술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3. 가해기업이 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액

② 법원은 피해기업의 중소기업기술 개발에 투입된 연구개발비와 제1항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의 인정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관련 자료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자료제출명령)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위반 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대방이 소지, 보관 또는 상대방의 통제하에 있는 문서, 글, 그림, 그래프, 표, 사진, 음성녹음 또는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 또

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전자매체에 저장된 정보로서 해당 매체에서 직접 취득할 수 있거나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형태로 전환한 정보

## 2. 그 밖에 지정된 유형물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해당하더라도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

다.

⑥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자료를 자료제출명령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료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7장 보칙

제46조(조세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7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9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22조에 따른 신고의 접수, 기술보호 진단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27조에 따라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28조에 따라 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34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 · 중재 업무를 수행하는 자
6. 제4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 · 위탁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8장 벌칙

제51조(벌칙) ① 타인의 중소기업기술을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제18조에 따른 기술 임치를 등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49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5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과태료)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